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박 기 열 위원장님!
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새누리당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남 창 진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

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
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
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용어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
혼동을 방지하고자 조례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
제안하는 바입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중 “금치산자”, “한정치산자”를 관련 법인 「민법」 제9조에 따라 “피성년후견인”,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개정하고, 제26조 회계의 원칙 중 “계리”할 수 있음을 “회계처리”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등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장님!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개정하고 올바른 용어사용을 위한 것으로,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